



2025.01 | 제4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규제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4

- ① 기업지배구조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 4
- ② 관련 법규 • 5
- ③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7
- ④ IIA의 3선 모델 • 9
- ⑤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 • 11
- ⑥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12
- ⑦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글로벌 관점 • 18
- ⑧ 감사위원회의 지원사항 • 19
- ⑨ 결언 • 20
- ⑩ [부록] 자료수집 • 21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 22

-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 22
-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 31
-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 37
-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 • 42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요약

- 본고는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함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63사(36.6%)로, 전기대비(61사) 4.5%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FY2023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따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5사(47.5%)로 전기대비(88사, 52.4%) 약 4.9%p 감소했고,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43사, 50.6%)에 불과함
- 결론적으로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기업지배구조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 지배구조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자는 업무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각 부서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내부감사부서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내부감사 할 권한을 부여함 ¹⁾
 - 각 부서의 책임자와 내부감사는 실질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대리인이 되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지게 됨
 -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은 설명책임의 연쇄 (Accountability Chain) 구조로, 거버넌스 수준에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유기적인 설명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내부감사는 객관적인 검증과 위험관리, 내부통제,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서 내부감사의 역할은 필수적임 ²⁾
 - 내부감사는 조직이 전략적, 운영적, 재무적 및 법규준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지배구조, 위험관리 및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통해 보증을 제공함
 - 내부감사 자원의 수준, 역량 및 구조가 조직의 전략과 부합하고 IIA의 국내내부감사기준을 준수할 때 내부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됨
- 내부감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 이사회에 지배구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음

1) IIA, 「회사 지배구조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2018

2) 양정우, 「기업지배구조하의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감사저널, 한국감사협회, 2023.03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2. 관련 법규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상법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감사를 상시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로 감사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사부서의 필요성이 크고, 상근감사 설치 기업의 경우라도 광범위한 감사업무를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에서 모든 상장법인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한하여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³⁾

<표 1>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국내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감사 모범규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를 둔 회사는 감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회사는 감사 산하에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3)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0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3조 등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2. 관련 법규

<표 2>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규정

구분	내용
NYSE 상장규정	• (303A.07.(c))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신규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303A.07.(b).(i).(A).(4))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도와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감독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303A.07.(b).(iii).(E~F))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내부감사의 책임, 예산, 인원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3.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내부감사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및 자격을 확립하고 보호해야 함
 -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함
 - 내부감사부서는 자격을 갖춘 최고감사책임자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내부감사부서가 간섭 없이 서비스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내 위치에 있을 때 내부감사활동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음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⁴⁾, 외부감사인인 실질적인 회계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내부감사부서는 업무감사의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임
 - 업무감사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진 및 경영진 산하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임
 - 이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인사권, 성과평가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함⁵⁾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4)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 감사'임

5) 정재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BFL), 제95호, 2019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3.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표 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Ⅳ.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생략)... (Ⅳ.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Ⅳ.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Ⅳ.1.4)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생략)...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생략)...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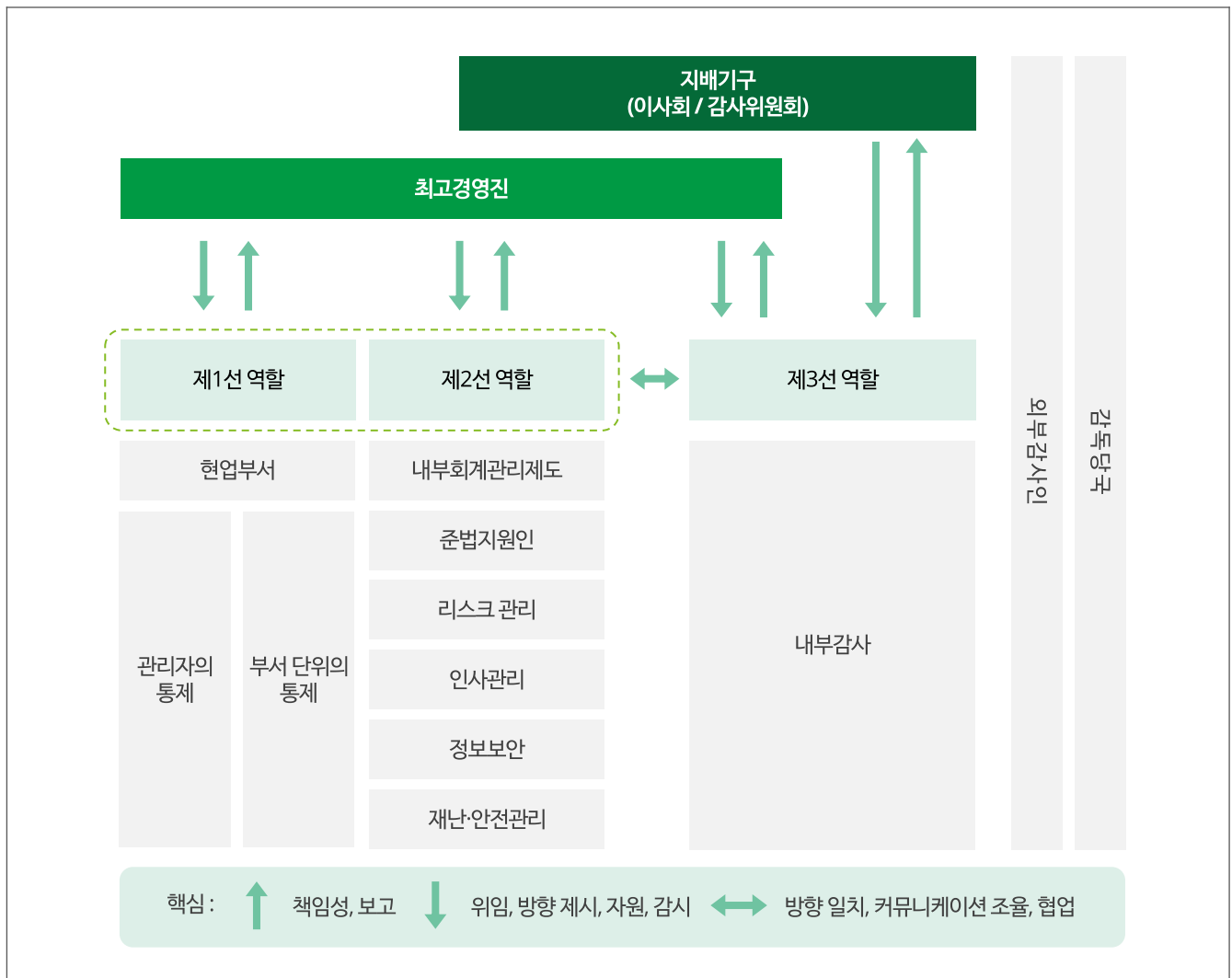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4. IIA의 3선 모델

1) 3선 모델이란?

-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가 제시하는 3선 모델(Three Lines Model)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구는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증과 조언을 제공함⁶⁾
- 3선 모델은 동 협회에서 발표한 3차 방어선 모델(2013) 대비 리스크 대응이라는 관점을 넘어 거버넌스의 개선 및 조직의 가치 기여에 공헌하는 능동적인 관점이 적용됨
 - 기존의 3차 방어선 모델과 대비하여 단순한 방어의 개념을 넘어 3선을 거버넌스 기관의 역할 및 책임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킨 점이 드러남

<그림 1> IIA의 3선 모델



6) IIA, 「3선 모델」, 2020, 3선 모델은 기존의 3차 방어선 모델이 업데이트 된 것임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4. IIA의 3선 모델

2) 3선 모델의 원칙

- 3선 모델의 6개 원칙은 내부감사 독립성의 중요성과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를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별하고 검증과 자문이라는 독특한 가치를 가능하게 함 ⁷⁾
- 이는 내부감사에게는 거버넌스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감사 보고 및 설명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며 ⁸⁾, 내부감사는 조직 내부에 위치하며 리스크 관리 전반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외부 거버넌스 기관과 적절히 연계하는 역할이 기대됨

<표 4> 3선 모델의 원칙 ⁹⁾

구분	내용
지배기구	- 지배기구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구조 및 프로세스를 갖춰야 함 - 진실성, 리더십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감시하는 책임성 -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및 자원 활용을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경영진의 조치 - 명확성과 확신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의 검증 및 자문
지배기구의 역할	- 법적, 규제적, 윤리적 기대치의 충족을 보장하는 가운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책임 및 자원을 경영진에게 위임함 - 목표 달성 진척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 객관적인 유능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 감시함
경영진·제1선·제2선 역할	- 제1선 역할은 고객에게 제품/서비스를 전달하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됨(지원부서 포함) - 제2선 역할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함
제3선 역할	- 내부감사는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포함)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검증과 자문을 제공함 - 내부감사는 발견결과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보고하여 지속적 개선을 유도함
제3선의 독립성	- 내부감사의 객관성, 권위 및 신뢰도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지배기구에 대한 책임성, 내부감사 업무 완수를 위한 인력, 자원 및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감사 서비스를 기획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편향 또는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통해 내부감사의 독립성이 달성됨
가치의 창조 및 보호	- 지배기구 역할과 제1선, 제2선 및 제3선 역할은 상호간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정렬되어 있을 때 집합적으로 가치창조 및 보호에 기여함 - 활동의 정렬은 커뮤니케이션, 협력 및 협업을 통해 달성되며, 리스크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신뢰도, 일관성, 투명성을 뒷받침함

7,9)) IIA, 「3선 모델」, 2020

8) 양정우, 「기업지배구조하의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감사저널, 한국감사협회, 2023.03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5.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

-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¹⁰⁾,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는 제시된 항목의 준수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여부(⑫번 항목)를 제시함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를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진단 등은 해당하지 않음¹¹⁾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¹²⁾
- 본고는 FY2023 KOSPI200 기업¹³⁾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¹⁴⁾
 - 부서명을 불문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기능)가 있는 경우 내부감사부서로 통칭함¹⁵⁾

<표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시기구 & (세부원칙 9- ①)¹⁶⁾

- (핵심원칙 9) 내부감시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10) 부서명, 부서 직원 수, 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 내부감사부서의 전반적인 현황이 공시

11,12,1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4.06

13) 본고는 2023년, 2022년 말일 기준의 KOSPI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조사하였으며(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참고함

14)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본고의 「부록」 자료수집에 수록함

15) 내부감사업무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내부감사부서로 분류함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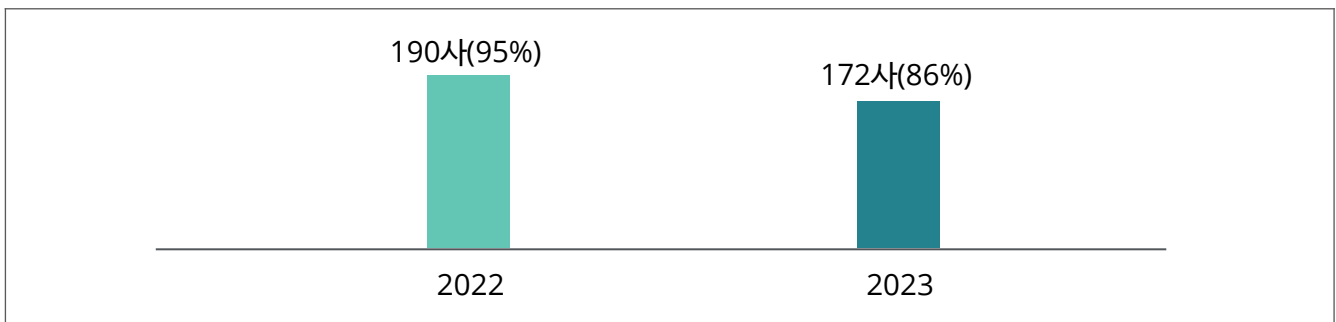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1) 내부감사부서 설치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72사(86%)로 전기 대비(190사) 9%p 감소함

- 이는 내부감사부서의 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FY2023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표준화된 서식으로 적용되면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되어 기업의 자체평가가 반영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FY2023 vs. FY2022 KOSPI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



□ FY2023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대표적인 예시를 <표6>에 제시하였고 IIA의 3선 모델에서 2선에 속하는 부서(예: 컴플라이언스팀, 내부통제팀 등)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예시

내용
• 감사실/감사팀/내부감사팀 • 윤리경영팀/윤리감사팀 • 감사위원회 사무국/감사지원팀 • 내부통제팀 • 경영개선팀 • 정도경영실 • 내부회계평가팀 • 컴플라이언스팀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86%) 중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87사(50.6%)로 전기 대비(81사) 8%p 증가하였고,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는 85사(49.4%)로 나타남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62사(36.0%)로 전기 대비(73사) 2.4%p 감소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노력을 이행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임

<표 7> FY2023 KOSPI2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	87(50.6%)
경영진	62(36.0%)
이사회	7(4.2%)
미공시	16(9.2%)
합계	172(100%)

<표 8> FY2022 KOSPI2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	81(42.6%)
경영진	73(38.4%)
이사회	6(3.2%)
미공시	30(15.8%)
합계	1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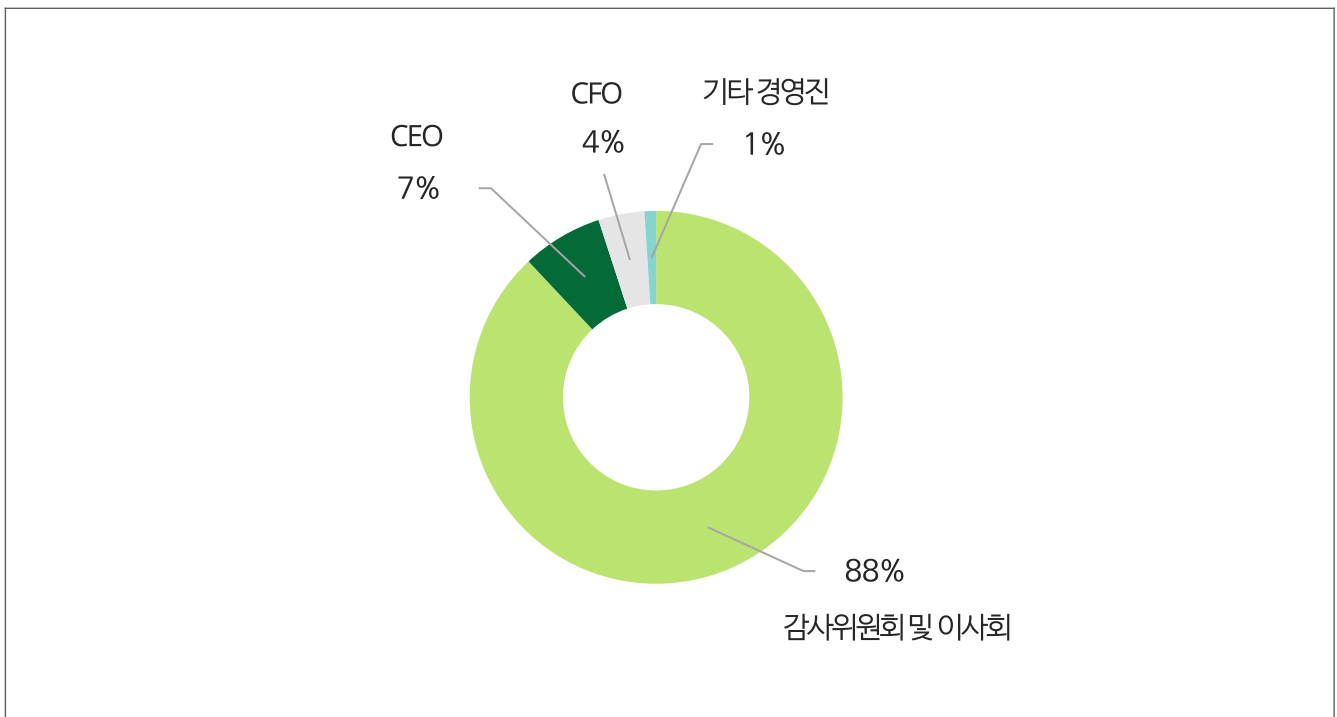
-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여부를 조직도나 관련 문구만으로 판단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잦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한편 글로벌 현황을 보면, 북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88%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능적 보고 라인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로 두고 있음
- IIA 국제내부감사표준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중 보고라인(dual reporting line)을 권고함
 - 기능적 보고는 연간감사계획, 내부감사 결과, CAE 평가 및 보상 등의 사안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함
 - 행정적 보고는 경비승인, 내부정책 및 절차, 인사에 관한 행정처리 등의 사안을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일상적 운영을 촉진함

<그림 3> 북미 감사위원회의 기능적 보고라인 ¹⁷⁾



17)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4 North American Pulse of Internal Audit」, 2024, 북미(미국 79%, 캐나다 13% 등) 내부감사인 422명 대상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¹⁸⁾을 갖는 기업은 106사(61.6%)로 전기대비 4.2%p 상승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내부감사 직무 수행에 관하여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기업은 32사(18.6%)로 전기대비(44사) 4.6%p 감소함
 - 반면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보장 방안이 없다고 명시(5사, 2.9%)한 기업은 전기대비(2사) 1.8%p 증가하였고, 미공시(29사, 16.9%) 기업은 전기대비(35사, 18.4%) 1.5%p 감소함

<표 9> FY2023 KOSPI200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106(61.6%)
구성원 신분보장만 명시	32(18.6%)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5(2.9%)
미공시	29(16.9%)
합계	172(100%)

<표 10> FY2022 KOSPI200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109(57.4%)
구성원 신분보장만 명시	44(23.2%)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2(1.1%)
미공시	35(18.4%)
합계	190(100%)

18)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시 동의 또는 협의 권한 보유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4)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모두 보유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63사(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기대비(61사) 4.5%p 증가한 수치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여전히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표 11> FY2023 KOSPI2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3(36.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24(14.0%)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43(25.0%)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42(24.4%)
합계	172(100%)

<표 12> FY2022 KOSPI2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1(3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20(10.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48(25.3%)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61(32.1%)
합계	190(100%)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6.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현황

- 한편,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회사의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FY2023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5사(47.5%)로 전기대비(88사, 52.4%) 약 4.9%p 감소함¹⁹⁾
 -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 수준(43사, 50.6%)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기대비(44사) 0.6%p 증가한 수치임

<표 13> FY2023 KOSPI20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²⁰⁾)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3(50.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7(8.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22(25.9%)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3(15.3%)
합계	85(100%)

<표 14> FY2022 KOSPI20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²¹⁾)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4(5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10(11.4%)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21(23.9%)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3(14.8%)
합계	88(100%)

19) 분석대상은 FY2023 KOSPI200 기업 179개사(FY2022는 180사),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5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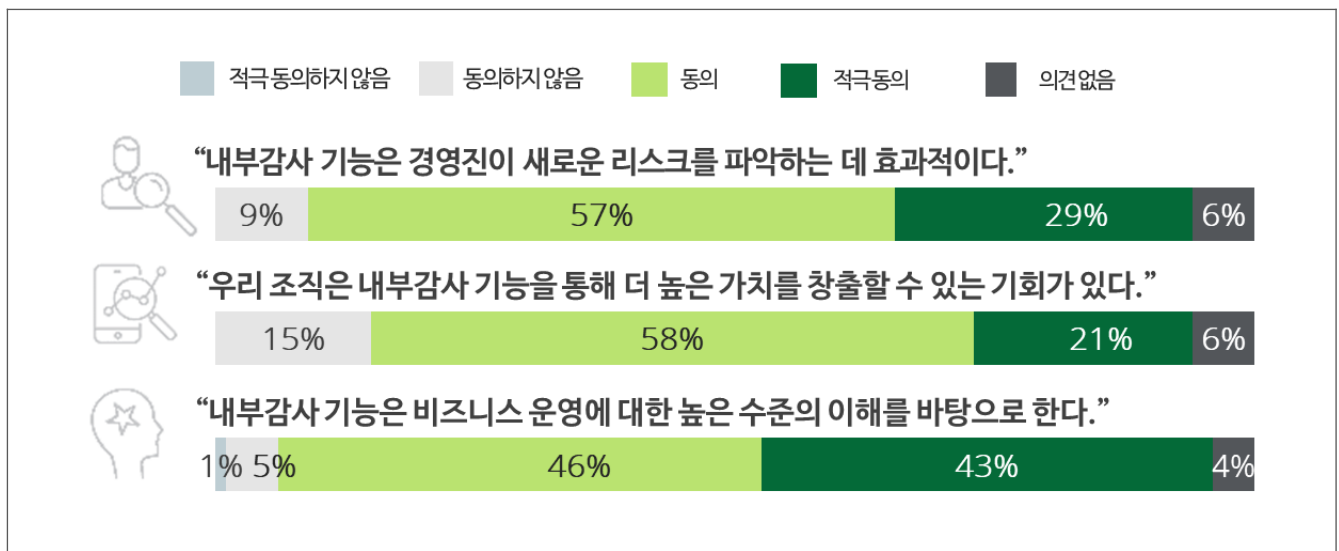
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8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7.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글로벌 관점

- 딜로이트 글로벌이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관점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는 내부감사가 조직에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입증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평가함
- 응답자의 86%는 내부감사 기능이 경영진이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79%는 조직이 내부감사 기능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망함
 - 응답자의 88%는 내부감사 기능이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4>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글로벌 관점 ²²⁾



- 이와 같이 내부감사 기능이 지배구조, 위험관리 및 통제에 대한 통찰로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22)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3rd Edition」, 2024, 미국 기반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 266명 대상 (응답자의 74%는 미국 상장법인 소속이며, 81%는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 소속)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8. 감사위원회의 지원사항

- IIA의 국제내부감사표준은 최고감사책임자(Chief Audit Executive, 이하 'CAE')가 최소 연 1회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평가하고 독립성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사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나 보호조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함

<표 15>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 예시 ²³⁾

내용
• CAE와 감사위원회(이사회)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 •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이사회)가 이미 승인하여 내부감사규정에 명시된 내부감사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우 • 경영진이 내부감사 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기록, 정보,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경우 • 경영진이 내부감사인에게 내부감사 발견사항을 보류하거나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내부감사부서의 예산이 내부감사현장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 • CAE가 책임을 지거나, 감독하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 부문에서 내부감사부서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거나 CAE가 이를 감독하는 경우 • 내부감사부서가 관리적으로 CAE의 보고를 받는 고위 임원(CEO 제외)이 관리하는 활동에 대해 검증 업무를 수행하거나, CAE가 이를 감독하는 경우, 예를 들어 CAE가 최고재무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 최고재무책임자에게도 보고하는 재무부서의 감사를 담당하는 경우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내부감사활동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표 16> 내부감사부서 활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필수조건 ²⁴⁾

내용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감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략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감사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기록, 정보, 인적·물적 자산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과 협력함 •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CAE를 지원함

23) IIA, 「국제내부감사표준」, 7.1 조직의 독립성, 2024

24) IIA, 「국제내부감사표준」, 6.3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지원, 2024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9. 결론

- 분석결과,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중 86%는 광의의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확보 현황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현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공시하여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로 보기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음
 -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7>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²⁵⁾

내용
•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내부감사가 이중의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 • CAE는 행정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진과 소통하고, 내부감사의 전략적 방향성, 감사업무의 이행 및 책임성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 이중의 보고체계를 통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내부감사규정에 명기 • 내부감사인원이 필요한 정보와 인력에 접근할 수 있고, 내부감사에 필요한 조사기법을 제약없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5)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01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10. [부록] 자료수집

- 본고는 KOSPI200 기업의 FY2023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사업보고서'의 I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공시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주로 참고하여 조사함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속', '산하', '직할', 또는 '직접 보고' 등의 문구로 기재된 경우와 조직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로 편제된 경우라도 내부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경영진 산하로 편제된 경우에는 경영진 보고라인으로 간주함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전·출입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¹⁾

요약

- ACGA²⁾는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미로 같은 한국 주주총회 길찾기' 보고서를 발간함
- 외국인 주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문제점들이 20년 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된 게 없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적이 있었음
- 전반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주요 문제로는 14일이라는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주총 직전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 부족, 외국인 투자자의 촉박한 투표 일정,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총 쏠림 현상 등이 있음
- 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권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함

배경

-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최근 한국의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 2006년 ACGA는 아시아 10개 국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한국은 10개국 중 8위로 하위권이었음³⁾
 -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의안 검토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의안별 세부 정보, 번역본 제공, 의안 상정 방식(이사 후보들을 일괄 상정하는 문제), 주주총회 집중 개최, 표결 결과 공시 등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 200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금번 보고서는 주주들의 참여와 주주총회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망라하고 주주총회 운영과 정관의 변경을 통한 개선, 관련 법규의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담음

1) ACGA, 「Navigating the Korea AGA maze」, 2024.11

2)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글로벌 투자은행(IB), 상장사, 회계법인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3) ACGA, 「Asian Proxy Voting Survey 2006」, 2006.09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주요 내용

- ACGA는 전반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함
- 전자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배당기준일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아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열리며, 이사 보수와 표결 결과 등 중요한 사안의 투명성이 부족함
 - 외국인 주주들의 효과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위임장 요건과 언어장벽, 여러 기관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절차적 장애물도 여전함

<표 1> ACGA 주주총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제안

구분	현황	개선안	관련 법규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2주 전 통지로 자료 검토 및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부족 • 정기주주총회 3월 말 집중 개최	• 소집통지 기한 28일 전으로 연장 • 배당기준일 1월 이후로 변경 • 특정 기간 중 정기주주총회 개최 회사 수 제한	• 표준정관 개정 • 상법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
사전 정보 제공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1주 전 공시로 검토 시간 부족 • 이사 보수 관련 세부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 주주총회 영문자료는 요약본만 제공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3주 전 공시 • 이사 보수 관련 정보 공시 확대 •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의무화 • 주주총회소집공고 전체 영문본 제공	• 상법시행령 개정 • 자본시장법 개정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지나치게 엄격한 참석장/위임장 요건 • 외국인 주주의 짧은 사전 투표기간 • 외국인 주주의 전자투표 접근성 저하	• 전자투표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 도입 •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인증 수단 개선 • 참석장 전자사본 허용	• 상법 개정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표 1> ACGA 주주총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제안 (계속)

구분	현황	개선안	관련 법규
주주총회 진행	- 대표이사(CEO)가 주주총회 진행 - 사외이사 불참 - 질의/응답 시간 부족 - 영어 통역 미제공, 통역자 동반 불가	- 주주총회 의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 - 사외이사 의무참석 - 질의/응답 시간 보장 - 주주 질문권, 발언권 명문화 - 의안자료, 의사록 영문본 제공	- 거래소규정 개정 - 상법 개정
표결 및 사후 공시	-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 가능 - 투표 시스템 문제로 집중투표 불가 - 표결 결과 미공시	- 집중투표 활성화 - 집중투표 가능하도록 투표 시스템 개선 - 주주총회 종료 직후 표결 결과 공시 의무화 (영문 포함)	- 거래소규정 개정 - 상법 개정

주주총회 소집 및 사전 정보 제공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 한국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은 14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21일과 ACGA가 권장하는 28일에 비해 짧음
- 대만은 대체로 30일(상장회사 86%가 해당)이고, 호주는 28일(상장회사),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홍콩 등은 21일이며 중국은 20일임
- OECD 조사에 의하면 칠레,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5개 국가만이 15일 미만의 통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⁴⁾
- 미국은 주주총회 소집 40일 전, 네덜란드는 42일 전에 통지하며 영국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 등도 최소 20일 이전에 통지함

4)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까지 통지를 권고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정 요건⁶⁾인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통지를 충족하고 있음
 - 국내에서 외국 운용사의 주총 안건에 대한 투표는 현지 의결권 행사 서비스 업체와 글로벌 수탁은행을 거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행사된 표를 모아 기업에 전달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에 비해 의결권 행사 일정이 촉박하여 주주총회 의안 검토 시간이 부족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을 마감하여 의결권 자문사와 접촉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시간도 충분하지 않음
- ACGA는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14일(2주) 전에서 28일(4주) 전으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제안함
 - 상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거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수 있음

2) 주주총회 집중 개최

-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3월 하순(3/21~31)에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⁷⁾
 - 2023년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94.2%가 3월 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개최 요일의 경우 금요일에 집중되고 있음
 - 이는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음을 의미하며,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수 기업 주식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특히 더 문제가 됨

5)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④ 주주권 보호 >> 2. 주주총회 >> 2.3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

6) 상법 제363조

7) 한국예탁결제원,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2024.03.13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 ACGA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여 주주총회를 분산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특정기간 동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회사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언함
 - 대만의 경우, 2010년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하루 200회로 제한하였고 이후 2012년에는 120회, 2015년에는 100회로 축소함
 - 싱가포르의 '상장기업 주주총회 모범관행 가이드'에서 대형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에 미리 주주총회 일정을 알리도록 하며, 거래소에서 다른 주요 상장회사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음

3)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총회 최소 1주 전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 사전 투표가 일찍 마감되는 외국인 주주들은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투표를 마쳐야 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최신 재무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
- ACGA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4)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의무화

-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7월에 발간하여 시의성 있는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 못함
 - 의결권 행사 시점은 3월이지만, 보고서는 전년도 7월에 발간된 것이고 포함된 데이터는 전전년도 것이기 때문임
- ACGA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데는 시의성 있는 관련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함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5) 이사보수 관련 정보

- 이사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⁸⁾, 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 보수 총액 한도로만 결정하고, 주주총회 의안 자료에 개별 이사 보수에 대한 설명 없이 보수총액 한도만 제시됨
 - 개별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주주총회 의안에 보수 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보수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가 어려움
- 개별 이사 보수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나,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에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시간이 없음
- ACGA는 보수 총액 한도 외에 주주총회 자료에 개별 이사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산정 근거, 주식보상 또는 기타 혜택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자료에 개별 이사 보수 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언함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1) 주주총회 참석 절차

-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통상 3~4개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주주총회 참석 시 외국인 투자자가 소속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이 필요하나 위임장 발급 권한에 대해 기업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름
- 상임대리인이 발급하는 참석장의 경우, 참석장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참관용으로 발급되는 경우 상임대리인에게 달리 명시적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음
- ACGA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참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 문의 시 기업들은 즉시 답변해야 하며, 참석장은 회사의 재량으로 전자사본도 허용하여 주주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함

8) 상법 제 388조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2) 전자주주총회 허용 및 전자투표 의무화

- 현재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서 사전 의결권 행사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2023년 전자투표의 행사율은 11.62%, 행사전자투표권자의 수는 27만 7천여 명이었음⁹⁾
 - ACGA는 외국인 주주들은 국내 주주들에 비해 사전투표를 더 일찍 마감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의 광범위한 활용은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함

주주총회 진행 및 표결, 사후 공시

1) 주주총회 진행

- 상법은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¹⁰⁾하고 있으며,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모두 사외이사의 참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 기업이 영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아닌 통역자를 동반할 수 없고, 주주총회소집공고 영문본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의안별 세부 정보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 영문으로 제공함
 -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은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나, 주주총회 의안과 자료는 현재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총회 의안 전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ACGA는 투자자들은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의장을 주주총회 의장으로 지정하고 사외이사들이 참석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주주총회소집공고, 의안, 의사록 등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언어장벽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함

9) 한국예탁결제원,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2024.03.13

10) 상법 제 366조의2 제1항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2) 주주 질문권과 발언권

-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의장에게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자'에게 발언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지만¹¹⁾, 주주들에게 발언 또는 질문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명확한 법조항은 없음
- ACGA는 투자자들은 기업에 주주총회 의제에 질의/응답 세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제언함

3) 집중투표

- 투표과정에서 특히 의결권위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집중투표로 행사된 다수 표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주들이 개별 후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하는 대신 복수의 후보에게 의결권을 배분하여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음
-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를 채택하는 경우는 제한적임
- ACGA는 집중투표의 광범위한 활용은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수주주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의 의결권행사서비스 회사들도 집중투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함

11) 상법 제366조의2 제2항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

4) 표결 결과 공시

- ☐ 한국은 주주총회 종료 후 표결 결과를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자산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지배구조보고서에 표결 결과를 공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총회 종료 2개월 후인 5월 말에야 공시됨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이후 찬성/반대 비율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만, 회사마다 공시 수준이 다름
- ☐ ACGA는 모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직후 찬성과 반대 비율을 포함한 표결 결과를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이는 거래소 공시규정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시사점

- ☐ 최근 배당 절차 개선, 전자투표제 도입 등으로 주주총회가 점차 '주주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널리 채택되지 않아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
- ☐ 주주총회의 투명성, 접근성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주주 환원 기조가 주주 친화적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¹⁾

요약

- '24.12.3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함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 가능하며, 이는 지배구조·내부회계관리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독립성 및 감사품질 향상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임
- 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구체화·정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함
- '25.1분기에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할 계획임

추진 배경

-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신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 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정책방향은 도입 당시('17.10월) 국회 정무위 논의나 감사원 지적('23.3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²⁾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³⁾
 - '24.12.3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함

1) 금융감독원,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2024.12.31

2) 금융위원회,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2024.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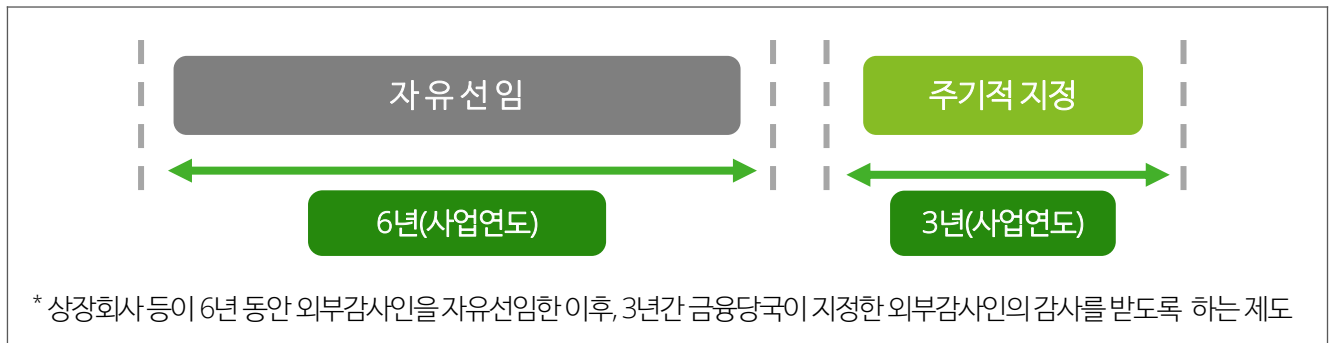
3) 금융위원회,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2024.10.31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게 되었음

< 그림 1>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

-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됨
 -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예정임
- 평가 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 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임

< 그림 2>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임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 중 74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되는 '25년까지 상장사 중 약 79% 이상이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결격사유는 크게 관련 법령위반, 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됨
 -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음
 -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함
 -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재무제표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등 경미한 경우는 제외),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됨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우수기업 평가기준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였음
 -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음
 -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음
-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음
 -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함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음
 -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예: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하며,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표 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사업연도 개시 전 외부감사계약 체결	50
2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3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250)	7)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80
4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5	자체 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표창 (+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 밸류업 우수기업, 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S~A+) 등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 (-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하여,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예: 지배구조 평가 하위 50% 수준) 가점부여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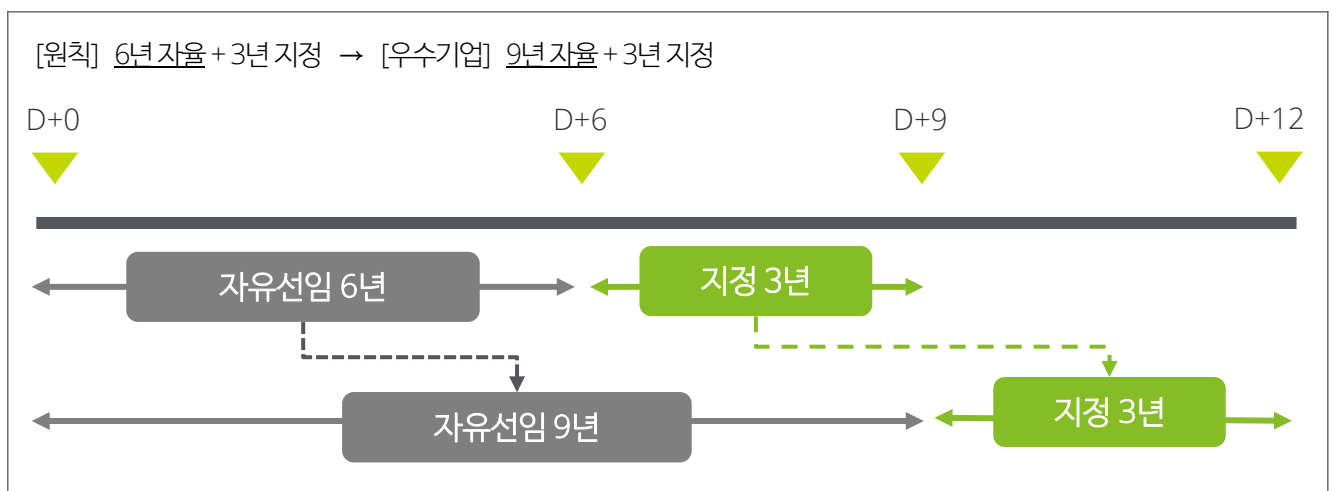
II.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지정 유예효과

- 유예 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예정임

<그림 3>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향후 계획

- '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임
 - '25년 6~7월(잠정)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 받아 '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임
-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음 ⁴⁾
- T/F에서는 '20년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 받은 기업들이 '29년부터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법·제도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7년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임

4)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2023.06.12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¹⁾

요약

- 기업은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 공시 시,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내 제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 충실히 공시,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회계오류 자진 정정 시 조치 감경,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등을 유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기말 감사 수행 시, 기업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등을 유의하여야 함

1. 자기 책임하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함

<표 1>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구분	내용		
제출의무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대상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방식	-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제출기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1) 금융감독원,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4.12.27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의무가 발생함
-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됨

2. 철저한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인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함

<표 2>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²⁾

구분	내용
도입 배경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중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
대상 회사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공시 시기	'24사업연도 선택,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24사업연도에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시 동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2)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11.11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예고했으며,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실시 예정임

<표 3> 회계이슈별 유의사항³⁾

구분	내용
수익인식 회계처리	•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비시장성 자산평가	•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내용연수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가상자산 회계처리	•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3)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 예고」, 2024.06.13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함
 -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하며⁴⁾,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⁵⁾해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함

4) 금융감독원,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3.11.30

5) 외부감사법 §22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5.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함
-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함⁶⁾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며, 회사 제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해야 함
 -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을 확보해야 함
 -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외감법 제22조) 준수 및 회사의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함

6.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참고 시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함

6) 금융감독원,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 2024.11.27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¹⁾

요약

- 12월 5일, 한국ESG기준원은 2024년 한국 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함
- 명예기업²⁾으로 1사, ESG 우수기업 부문에서 최우수기업 1사, 우수기업 4사를 선정하고 지배구조 우수기업부문에서 최우수기업 2사, 우수기업 5사를 선정함

개요

- 한국ESG기준원은 12월 5일, '2024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한국ESG기준원은 2002년 설립 이래 매년 환경, 사회적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ESG) 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왔음
 - 2024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결과 상위기업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등의 후보기업' 중 심의를 거쳐 ESG 개선 및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함
 -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제공하는 공시 및 ESG 교육 프로그램 비용 면제 혜택이 부여됨

2024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선정 사유

1) 명예기업 부문 - SC 제일은행

- 사외이사과 경영진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ESG 거버넌스 혁신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함
 - 최고경영자의 포용 리더십, 사외이사과 경영진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소통 문화, 적극적인 사외이사 지원 등 조화로운 체계 구축
 - 이사회와 감독하에 도전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행 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ESG 경영체계를 확립
 - 단기·중장기 승계 플랜 운영과 이사회와 차기 CEO 육성 검토를 통해, CEO 교체 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적 승계 체계를 구축

1) 한국ESG기준원,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4.12.05

2) 당해 선정연도 포함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대상기업'에 선정된 기업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

ESG 우수기업 부문

1) ESG 최우수 - (주)현대이지웰

□ 전략적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혁신을 가속화함

- 친환경 경영 내재화를 위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레벨의 전사 환경경영 관리 강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수준 제고
-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ESG 정책 구축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현을 통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책임경영 실천
- 이사회 참석률 제고, 이사회 평가 검토 등 이사회 문화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배당정책 공개와 이행을 통한 주주환원 노력 우수

2) ESG 우수 - SK스퀘어(주)

□ 전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 중심의 ESG 관리체계를 강화함

- 투자회사 환경경영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청정기술 투자 전략 수립을 통한 계열사 기후변화대응 역량 확대
- 투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ESG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포트폴리오 내 ESG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상생 환경 조성
- 기업가치 제고 성과에 따라 주식을 부여(PSU)하는 중장기성과연계보상제도를 도입, 경영진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가치 증대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

3) ESG 우수(코스닥 부문)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적극적인 ESG 정보공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리스크/기회 요인에 따른 사업 영향도, 재무영향 및 기후 회복력 상세 공개 등 환경 정보 공시 우수
- 안전보건, 인권,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업체 리스크 진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급망 전반의 사회적 책임 수준 제고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적극적 이사회 평가 시행, 이사회의 중대성 검토 등 이사회 리더십 강화 노력

4) ESG 우수(개선 부문) - (주)포스코퓨처엠

□ ESG 리스크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및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함

- 친환경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R&D 확대 및 전 과정 평가 수행, 녹색구매 정책 내재화 및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을 통한 공급망 관리 강화
-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 이니셔티브 선도 및 전사 차원의 공급망 ESG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밸류체인 구축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과 활발한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노력

5) 금융회사 ESG 우수 - 삼성카드(주)

□ 고객 권익 보호 매커니즘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포용·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확대함

-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및 TNFD 가입, 멸종위기종 관련 친환경 상품 제공을 통한 선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이행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포용적 금융생태계 구축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통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금융서비스 제공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ESG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ESG 경영 전략을 수립·검토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

지배구조 부문

1) 지배구조 최우수 - (주)현대홈쇼핑

-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 및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주주 권익 보호 관행이 우수함
 -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 및 공개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 제고
 - 21년 공개된 배당정책을 3년간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신뢰성 확보
 - 2020년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를 실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최우수 - 신한카드(주)

- ESG 경영 지평을 확장하는 선도적 지배구조와 소통 문화를 정착시킴
 - 이사회가 검토한 ESG 중대성 요소를 경영진의 KPI에 반영하여 실효적인 ESG경영이 이뤄지는 선도적인 거버넌스 구축
 -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사외이사간 소통 문화 구축
 - 대표이사와 이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의지가 기업 문화에 반영되어 ESG경영 지평 확대

3) 지배구조 우수 - SKC(주)

-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선도함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기반 마련
 -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공개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면밀히 고민하고 논의
 - ESG 중대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활동 결과 등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의 리스크 감독 기능 강화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

4) 지배구조 우수 - LG넥스원(주)

- ☐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함
 - 최고경영자 후보 자격요건, 선발기준, 개시절차, 후보군 교육 등을 담은 구체적인 승계정책 마련
 - '최고경영자 승계위원회'를 통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임 프로세스 구축 노력

5) 지배구조 우수(코스닥/개선 부문) - (주)클래시스

-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부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감사 기능을 강화함
 -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감사업무 부서를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하고, 감사업무 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운영 지원
 - 감사위원회에서 내부 감사계획에 대해 직접 검토 및 승인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

6) 금융회사 지배구조 우수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 ☐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이사회 중심 ESG 경영체계 마련 등 선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의 본질적인 견제 기능 구현
 -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활동을 관리·감독
 - 이사회가 검토한 ESG 중대성 요소를 경영진의 KPI에 반영하여 실효적인 ESG 경영이 이뤄지는 선도적인 거버넌스 구축

7) 금융회사 지배구조 우수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 ☐ ESG 모범규준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모범규준에 따른 건전한 이사회 운영
 -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 확보 및 활발한 위험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한 건전한 내부통제체계 운영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수임 기준 공개,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배제, 외부감사인 활동에 대한 평가 정책 및 내역 공개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노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